

육시설(예: 어린이집)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④ (생략)

제7조(활동 영역) ① ~ ③ (생략)

④ 교육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.

<단서 신설>

제8조(인정 범위) ① (생략)

②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등 실비 이외 보수나 금전(장학금 포함)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.

<단서 신설>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활동 영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다만, 시·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센터(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)에서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(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(www.1e.or.kr)에서 확인: 광역문해기관, 프로그램운영기관, 학력인정 기관 등)

제8조(인정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다만, 시·도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방안인 온라인 멘토링 활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